

등록번호	청소행정과-26051
등록일자	2014. 12. 16.
결재일자	2014. 12. 1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청소운영팀장	청소행정과장	환경도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권기업	안승준	오문식	여장권	조인동	12/17 문석진
협 조	음식물관리팀장 유명선 재활용팀장 김천배				

—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한」 —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 연장계약체결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업비
	기관·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 대 문 구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연장계약체결 계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대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폐기물 수집·운반과 지속적인 청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2015년 상반기 중 종량제수수료 인상과 대행대가 지급방식변경 및 지역제한해제에 대한 시조례개정 등을 대비하여 생활폐기물(재활용, 음식물, 대형폐기물처리) 수집·운반 대행업체와의 제한적 연장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추진경위

-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체계 구축과 쾌적한 환경조성
-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대행계약기간 만료 도래

2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 처리 등) 제2항
-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제5조(생활폐기물 처리 등)
- 서대문구 폐기물관리조례 제12조(생활폐기물의 처리)
- 환경부 예규 제495호(2013.9.11)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3 대행업체 현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대행업체 및 대행지역

업체명 구분	서부환경(주)	서울환경용역(주)	아이앤지환경(주)
대표자	최진호	이상봉, 유관주	최승호
주소	남가좌동 329-35	북아현동 1-452	남가좌동 329-35 (402호)
생활폐기물 영업구역	홍은1·2동,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충현동, 천연동(현저동제외) 북아현동, 신촌동	현저동, 연희동, 홍제1·2·3동

□ 대행업체 인력 및 장비현황

(2014. 10월말 현재)

구분	업체명	서부환경(주)	서울환경용역(주)	아이앤지환경(주)
	운전원		13명	11명
미화원		25명	25명	20명
차량		15대	13대	10대
컨테이너		11대	11대	5대

□ 대행업체 처리실적

(2014. 10월말 현재)

구분	업체명	서부환경(주)		서울환경용역(주)		아이앤지환경(주)	
		년처리량	일처리량	년처리량	일처리량	년처리량	일처리량
생활폐기물		8,148톤	27.2톤	9,302톤	31톤	7,601톤	25.3톤
음식물폐기물		7,392톤	24.5톤	7,472톤	24.9톤	7,635톤	25.1톤
사업장폐기물		222톤	0.7톤	1,178톤	3.9톤	-	-
재활용품 수집량		2,507톤	8.4톤	3,161톤	10.5톤	3,055톤	10.2톤

□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및 대행지역

(2014. 10월말 현재)

구분	업체명	서부환경(주)	웰빙환경(주)
대표자		최진호	장오식
주소		남가좌동 329-35	남가좌동 332-27호
영업구역		홍제1·2·3동, 홍은1·2동,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
처리량		1,853톤	1,124톤

□ 현행 대행체계의 문제점

- 대행대가 지불방법 “독립채산제”의 지방재정법 위반
 - 지방재정법 제15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및 제4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
 - 수수료 처리 회계투명성이 저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재정운영 필요
- 낮은 임금 등 대행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열악
 -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직영 대비 상대적 저임금(직영 환경미화원의 54%수준)

□ 개선방향

- 종량제 수수료 예산편입으로 지방재정법 위반 해소
 -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단계적 전환
- 원가계산에 의한 대행비용 지불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해소
 - 수집·운반비 세출예산 편성 대행업체 지불
 -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산정은 원가계산에 의거 지급
 - 원가계산에 의한 정확한 장비·인력 투입에 근거한 비용지급으로 개선

□ 종량제수수료 현실화

- '97년 종량제 수수료 인상 후 동결로 원가에 현저히 미달
- 2015년 상반기 중 종량제 수수료 인상 -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동일한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안 제시
 - 생활쓰레기 20ℓ : 340원에서 440원으로 인상
 - 음식물쓰레기 2ℓ : 40원에서 140원으로 인상
- 종량제수수료 인상 후 전액 세입조치
- 원가계산에 의한 수집·운반 비용 대행업체에 지불
 - 상반기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실시
 -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톤당 단가제)로 변경

□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지역제한규정 개정예정

- 제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의 영업구역) 시장은 법 제25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시 영업구역은 당해 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의 전역으로 한다

□ 폐기물관리법 및 구조례 관련규정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2항】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영업구역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업구역을 자치구로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 지침과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영업구역을 자치구로 제한 함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7항】

-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서대문구 폐기물관리조례 제12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항】

5

대행계약의 연장계약체결

- 대행기간 : 2015. 1. 1. ~ 시·구조례개정에 따른 지역제한해제 및 종량제 수수료인상과 대가지급방법 변경에 따른 공개경쟁계약실시까지

- 계약방법 : 등록허가업체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연장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1항 8호 사.
-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제7조(영업구역제한) 및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12조(허가 받은자에게 대행구역을 지정)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및 제25조 제6항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서 제4조 제2항

□ 계약대상 : 생활폐기물류 수집·운반(생활, 재활용, 음식물, 대형폐기물)

□ 대행계약으로 동일업체 선정시 효율성

- 일관성 있는 청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혼란 방지 및 기동순찰시 한번에 처리함으로 작업이 용이하고 민원처리시 신속대응 가능
-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동일한 요일에 수거하므로 혼합배출시 처리가 용이하고 수거 후 뒷마무리 철저히 가로환경 청결유지 가능
- 대행업체의 구분이 명확하여 책임소재가 분명함으로 신속한 처리 가능
-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활용이 가능하여 통합작업으로 유기적인 업무체계유지

□ 대행계약의 연장계약사유

- 자치단체와 대행업체 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 구축된 긴밀한 네트워크 등을 통한 협조체계 구성이 수월하게 이루어짐
- 원활한 수거체계 확립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유지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경쟁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단계에서 경쟁입찰은 부실한 업체 선정으로 이루어 질 우려가 있음
- 비 숙련 노동자의 작업시 비효율화로 인한 주민혼란 방지
- 차량 및 장비의 유희화로 인한 기존 업체의 손실 보존

□ 단기계약시 문제점

- 불투명한 재계약으로 장비교체시기 및 기반시설 투자에 어려움
- 청소의 연속성 유지 및 책임의식 결여
-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직원의 고용 불안 및 기술축척 불리

□ 단계적 공개경쟁 추진

- 2015년 상반기 종량제 수수료 인상
- 주된 영업소 소재 자치구로 영업구역 제한 - 서울시 조례개정 필요
- 대행대가 지불방법 변경(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시 대행계약서에 공개경쟁에 의한 대행계약 조항 명시 추진

6

행정사항

- 청소대행 방법 변경시(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 계약서에 재계약 명시
- 환경부와 서울특별시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대행개선 방안 추이에 따른 점차적인 경쟁입찰 추진
- 생활폐기물 종류별 수집·운반 대행업체 구분하여 재계약 추진
- 생활폐기물 종류별 수집·운반 대행업체와의 연장계약의 기간은 종전계약 기간인 2년이내